

김상수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

이 승 우*

환경분쟁사건으로서 우리나라의 새만금 방조제 사건과 일본의 이사하야 사건 등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담론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순기능도 하지만 법원에 의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환경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재판외 분쟁해결방법에 의해서 분쟁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.

환경분쟁시 재판외 해결방법으로서 환경분쟁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조정(調整)에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7조 이하의 알선(斡旋), 같은 법 제30조 이하의 조정(調停), 같은 법 제36조 이하의 재정(裁定)이 있습니다. 이러한 법제 하에서 교수님의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.

<문 1>

환경분쟁의 재판외 분쟁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법제를 두고 있지만 <표 1>에 의하면 한국은 환조위에 의한 재정사건이 조정사건 보다 많고, <표 2>에 의하면 일본은 공조위에 의한 조정사건이 재정사건보다 많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? 그리고 환조위에서 처리한 사건에 비해서 일본의 공조위에서 처리한 사건이 규모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.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?

*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

<문 2>

우리나라의 환경분쟁에 대한 환조위의 조정결과에 당사자가 승복하는 경우가 2004년까지 총 1239건 중에서 1032건으로 승복율이 83%라면 상당수의 분쟁 관련당사자들이 환조위의 조정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절차와 연계해서 역할분담할 이유가 있는지요?

<문 3>

교수님께서서는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재판외 분쟁해결방법을 재판절차와 연계해서 역할분담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노동분쟁의 경우 행정소송 전에 노동위원회의 전치절차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환경분쟁을 재판과 연계해서 법원이 사건을 환조위에 송부해서 처리하게 한다면 환조위의 위상이 높아지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환조위의 결정을 법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환조위의 조직을 법원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.

환경분쟁시 분쟁물의 성격이나 많은 분쟁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상당한 손해배상청구액과 그 결과에 대한 기속력을 생각하여 법원이 행정법원에 특별관할부를 두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.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